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의 장	기 관 의 장



제 1114 호 2018. 4. 5. (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79호[하천 점용허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81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85호[도로명주소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86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7

안 내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79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하천의 명칭

산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박홍준 외 8인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신정현대휴타운 303동 2209호

3. 점용 목적 및 개요

토지의 점용(성토)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산하동 920-28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 일시 1,05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당초 : 2016. 03. 17. ~ 2016. 08. 30.

변경 : 2016. 03. 17. ~ 2018. 09. 0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 2018 - 8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하이아트건설 대표 이영구가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택지개발지구 C1블럭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하였기에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 **【붙임1】** 참조

2018년 4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붙임1】

1.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명칭	송정택지개발지구 C1블럭 금강펜테리온2차 아파트 건설공사					송정택지개발지구 C1블럭 금강펜테리온2차 아파트 건설공사					변경없음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택지개발지구 C1블럭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택지개발지구 C1블럭					변경없음
사업주체	(주)하이아트건설 대표 손영곤					(주)하이아트건설 대표 이영규					변경
사업주체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2019호 (대치동, 금강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2109호 (대치동, 금강타워)					변경없음
내지면적	19,984.0000㎡					19,984.0000㎡					변경없음
건축면적	3,161.0861㎡					3,175.6622㎡					변경
연 면 적	56,412.2347㎡					56,387.4451㎡					변경
건폐율/용적률	15.82% / 188.37%					15.89% / 188.53%					변경
층수/동수 /세대수	지하2층, 지상15~25층 / 주: 5개동, 부속: 10개동 / 304세대					지하2층, 지상15~25층 / 주: 5개동, 부속: 10개동 / 304세대					변경없음
사업규모	형별	세대수	전용 면적	공동 면적	공급 면적	형별	세대수	전용 면적	공동 면적	공급 면적	-
	99㎡A	218	99.0000	25.7568	124.7568	99㎡A	128	99.0000	25.6650	124.6650	변경
	99㎡B					99㎡B	90	99.0000	26.0736	125.0736	변경
	90㎡A	44	90.7154	25.2060	115.9214	90㎡A	44	90.7154	25.6894	116.4048	변경
	90㎡B	42	90.7642	25.8872	116.6514	90㎡B	42	90.7642	25.6378	116.4020	변경
	계	304				계	304				변경없음
부대복리시설	구 분		합 계(㎡)			구 분		합 계(㎡)			-
	관리사무소		185.0206			관리사무소		174.0864			변경
	주민공동시설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474.6214			주민공동시설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474.2736			변경
	경로당		112.1374			경로당		113.4477			변경
	작은도서관		128.6640 (전용 : 107.7770)			작은도서관		144.3037 (전용 : 108.2285)			변경
	어린이집		181.1745			어린이집		183.4615			변경
	어린이놀이터		937.0000(2개소)			어린이놀이터		937.0000(2개소)			변경없음
	주민운동시설(외부)		471.0000(1개소)			주민운동시설(외부)		471.0000(1개소)			변경없음
	경비실		17.9406			경비실		17.9406			변경없음
	조경시설		4,537.3800(22.71%)			조경시설		4,537.3800(22.71%)			변경없음
휴게소		5개소(파고라)			휴게소		5개소(파고라)			변경없음	
근린생활시설		387.3654			근린생활시설		385.6400			변경	
사 업 비	130,884,693천원					130,884,693천원					변경없음
사업기간	2017. 05 ~ 2019. 09					2017. 05 ~ 2019. 09					변경없음
승인조건	"붙임과 같음"					"붙임과 같음"					변경없음

2.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3. 승인관련 서류 : 북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85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8길 6-4(진장동) 외 5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4. 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순번	중점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86B 3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8길 6-4	2018-04-05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63B 13-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2길 14	2018-04-05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3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279-1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3길 6-18	2018-04-05	기존 지명마을인 제내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885-6	울산광역시 북구 사정7길 2	2018-04-05	불평마을과 슬관마을을 합하여 사정이라 칭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8B 8,9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1길 14-12	2018-04-05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으로 울산시미이던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6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신여지구 80B 1-1L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13길 1	2018-04-05	화암마을 명칭을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4-05-07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8- 86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22길 14	울산광역시 복구 진장명촌지구 63B 13-1L	2018.4.5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4. 5.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